

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

방송통신위원회

법제처 심사 전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이사·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) ① 이사회는 당해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가 법 제18조의2제1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사 및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가 법 제18조의2제2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과 일자, 대상인원,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이사·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) ① 이사회는 당해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이사회가 법 제18조의2제1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사 및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이사회가 법 제18조의2제2호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과 일자, 대상인원, 집행금액 등을 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</u> <u>④ 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	
연 락 처	(02) 2110 - 1415